

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 1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“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”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단체 참여와 「공직자윤리법」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원 중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규정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제2조제1항제1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규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있음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5년 7월 21일 ~ 8월 10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요망

다. 검토결과 : 미반영

- 상위법인 「공직자 윤리법」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, 제출된 의견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적합한자를 위촉하는 것임(자치법규 입안시 조문의 간결성) - 붙임 검토서 참고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부서협의기간 : 2015년 7월 21일 ~ 8월 10일(20일간)

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(사회복지과) : 원안동의(2015.7.30)

9. 기타 참고사항 : 덧붙임

- 2015년도 조례규제개선과제 정비협조 요청 공문[규제개혁추진단-478(2015.2.11)]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조사담당관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직자윤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법관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”를 “**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**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3조제1항”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공보감사담당관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공보감사담당관 김 시 남
	팀장 직위·성명	감사팀장 김희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윤정 (790-5270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 한조례</p>	<p>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p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직자윤리법</u> (이하 “법“ 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공직자 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“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공직자윤리 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 1. 3인의 위원은 관내의 <u>법관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의장과 협의하여</u> 위촉한다. 2. (생략)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 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</u>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1. <u>법 제3조제1항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3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1. 「<u>공직자윤리법</u>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 다)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위 원회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 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■ 공직자윤리법

제9조(공직자윤리위원회) ① ~ ② <생략>

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**다만, 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29.>**